

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법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)		
출자대상 문화산업 전문회사	⑥ 법인명	⑦ 사업자등록번호	
	⑧ 대표자 성명	⑨ 개업일	
	⑩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

⑪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(= ㉓)

가.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

⑫ 영상콘텐츠 구분 (㉑, ㉒, ㉓)	⑬ 영상콘텐츠 명칭	⑭ 방송 (상영, 시청에 제공) 된 날	⑮ 제작기간	⑯ 세액공제 대상여부	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	⑱ 국가 보조금 등	㉑세액공제 대상금액 (⑰-⑱)
			. . . ~ . . .	여, 부			
			. . . ~ . . .	여, 부			
			. . . ~ . . .	여, 부			
계							

나. 공제세액 계산

출자일	㉒출자금액	㉑ 세액공제 대상금액 (= ⑮)	㉒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	㉓ 공제세액 [= ㉒ × (㉑ ÷ ㉒) × 3%]
년 월 일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"⑫ 영상콘텐츠 구분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5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㉑ 방송, ㉒ 영화, 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"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.
- "⑬ 영상콘텐츠 명칭"란: 해당 영상콘텐츠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"⑭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"란: 해당 영상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.
- "⑯ 세액공제 대상여부"란: 해당 영상콘텐츠가 최초 방송(상영, 시청에 제공)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"여"에 표시하며, ㉑ 방송 또는 ㉒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"여"에 표시합니다.
 -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
 - 방송되거나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
- "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"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비용을 적되,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.
 - 광고 및 홍보비용, 기업업무추진비
 - 「소득세법」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「소득세법」 제29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
 - 배우 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 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(위 1), 2)의 금액은 제외합니다]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
- "⑱ 국가 보조금 등"란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.
- "㉒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"란: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총 비용(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과 그 밖의 투자를 통해 조달한 비용을 모두 포함)을 적습니다.